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48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이철규 · 서명옥 · 박준태
송언석 · 조지연 · 김위상
엄태영 · 신동욱 · 김은혜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전력계통”을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2.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3.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4.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5. 그 밖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 중 “제27조의2제5항”을 “제2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2호 중 “제27조의2제5항”을 “제2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의2제4항”을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 ----- <u>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u> ----- ----- -----.
<u><신 설></u>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u>전력계통의 적정성 · 안전성 및 전기품질</u>
	2. <u>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u>
	3. <u>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u>
	4. <u>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 공급비용</u>
	5. <u>그 밖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u>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u>제27조의2제5항</u> 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11의2. <u>제27조의2제6항</u> ----- ----- -----
12. ~ 15. (생략)	12. ~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3항, <u>제27조의2제5</u> <u>항</u>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u>제27조의2제</u> <u>6항</u>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27조의2제4항</u>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u>제27조의2제5항</u> -----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